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안내

당사 운용 펀드의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의 변경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대상투자신탁: AB 글로벌 성장주 증권투자신탁(주식 - 재간접형)

□ 변경 대상서류: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 변경일: 2010년 11월 9일

□ 변경 내용: 환매대금 지급일 관련 정정

* 집합투자규약 변경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27조(환매가 격 및 환매방법)	②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7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8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②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9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제28조(환매연 기) 제1항 부분 삭제 및 제7항 일부 수정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6영업일)전의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7영업일)전의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투자설명서 변경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2부. 집합투 자기구에 관한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 격

<p>사항</p> <p>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p> <p>나. 환매</p>	<p>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D+6)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p> <p>(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p> <p>(중략)</p> <p>(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p> <p>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5영업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6영업일)전의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p>	<p>(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p> <p>(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p> <p>(중략)</p> <p>(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p> <p>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영업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7영업일)전의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p>
--	---	---